



관 세 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」 개정 안내

1. 최근 담배 규제 변화*에 따라 세금탈루, 유해성에 대한 국회·언론 지적이 지속제기 되고 있음에 따라 국경단계에서의 세수 정상화 및 안전성 관리 역할에 대한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* 「담배사업법」 개정 시행('26.4.24.)에 따라 합성니코틴 용액에 대해서도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 관련 세금 부과 중

2. 이에 따라, ▲합성니코틴(원액 포함) 제출서류 재정비하고, 유사·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, ▲합성·유사·무니코틴에 대한 수리 전 분석을 통해 통관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「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」이 '26.8.18.(화)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3. 이에 따라 전국세관 수입부서에서는 동 지침대로 니코틴 관련 물질에 대해 통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, 한국관세사회에서는 회원사 및 화주에게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주시고, 시스템운영팀에서는 유니패스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「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」 개정 전문 1부.

관 세 청 장



수신자 1. 전국세관 수입부서(직속기관 포함), 2.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, 3. 한국관세사회

주무관 권기범 행정사무관 대결 2026. 7. 23.
강승현

협조자

시행 통관기획과-2121 (2026. 7. 23.) 접수

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 / www.customs.go.kr

전화번호 042-481-7733 팩스번호 042-481-7819 / kkses@korea.kr / 비공개(5)